

부조리 신고 등에 관한 운영규정<사규명 개정 2013.10.25>

제정 2006.11.23
개정 2006.12. 8(개폐정리)
개정 2011. 6. 9(개폐정리)
개정 2012.10.25
개정 2013. 4.30(개폐정리)
개정 2013.10.25
개정 2014. 7.31
개정 2015. 6.30(개폐정리)
전부개정 2015.10.23.
개정 2016.11. 2
개정 2020. 3.11.
개정 2020. 9. 9(개폐정리)
개정 2021.3.25.(개폐정리)
개정 2021. 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부조리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3.11.>

가.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사규·지침·예규(이하 “사규등”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개정 2021. 7.23.>

나. 공사의 예산사용, 공사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사규 등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1. 7.23.>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임직원 행동강령”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외부인을 말한다. <개정 2020. 3.11.>

가. <삭제 2021. 7.23.>

나. 공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 <개정 2020. 3.11> <개정 2021. 7.23.>

다.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조사 또는 수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3.11.> <개정 2021. 7.23.>

5.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를 의미한다. <신설 2020. 3.11.>

가.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나.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마.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그 명단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 (사장의 책무) ①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부조리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조리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개폐정리 2020. 9. 9>

② 부조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개폐정리 2020. 9. 9>

③ 부조리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조리행위 신고자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폐정리 2020. 9. 9>

④ 부조리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폐정리 2020. 9. 9> <기존 제5조제2항 이기 2021. 7.23.>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사규등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조리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11.> <개정 2021. 7.23.>

②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23.>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조리행위등의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상근감사위원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부조리행위등의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제3항 이기 2021. 7.23.>

③ 책임관은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종결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감사 지원부서의 장에게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7.23.>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의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조리행위등의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23.>

② 책임관은 부조리행위등의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

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별지서식 제1호)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행위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신고접수관리대장(별지서식 제2호)에 기록하고, 접수증(별지서식 제3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별지서식 제4호) 및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별지서식 제5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23.>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별지서식 제6호)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 7.23.>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23.>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23.>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23.>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감사·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23.>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수사한 결과, 당해 부조리행위등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회,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부조리행위등을 한 경우 책임관은 그 사실을 발견한 때 수사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23.>

⑤ 책임관은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회,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직무관련 범죄고발세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7.23.>

⑥ 책임관은 감사·조사·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23.>

⑦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내용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3.11.> <개정 2021. 7.23.>

⑧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감사·조사·수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별지서식 제4호)와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별지서식 제5호)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기존 제7항에서 이기 2020. 3.11.> <개정 2021. 7.23.>

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조리행위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신설 2021. 7.23.>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⑩ 제9항에 따른 감사·조사·수사 결과 통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

021. 7.23.>

⑪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의 업무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기존 제8항에서 이기 2020. 3.11.> <기존 제9항 이기 2021. 7.23.>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 7.23.>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조리행위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23.>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개정 2020. 3.11.>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 7.23.>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공사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 3.11.>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개정 2020. 3.11.>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개정 2020. 3.11.>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감사·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개정 2020. 3.11.> <개정 2021. 7.23.>
 7.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3.11.> <개정 2021. 7.23.>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조리행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개정 2020. 3.11.> <개정 2021. 7.23.>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23.>

3.>

- ② 책임관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게 징계(별표 3)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11.> <개정 2021. 7.23.>
-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감사·조사·수사 및 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여부 확인서(별지서식 제6호)를 제출받아야 한다. <기존 제2항에서 이기 2020. 3.11> <개정 2021. 7.23.>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23.>

② 누구든지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23.>

③ 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별표 3)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폐정리 2020. 9. 9> <개정 2021. 7.23.>

<조문개정 2020. 3.11>

제12조 <삭제 2020. 3.11.>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신고자 보호) ① 책임관은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23.>

1. 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개정 2021. 7.23.>
3. 규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개폐정리 2021.3.25>
4.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불이익 조치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에 의한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혹은 동법 제62조의5에 의한 일시정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이 필요

한 경우 <개정 2021. 7.23.>

② 책임관은 제1항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별표 3)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23.>

<조문개정 2020. 3.11.>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조리행위등을 신고를 한 임직원에게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11.>

<개정 2021. 7.23.> <개폐정리 2020. 9. 9>

제16조의2(포상 및 보상 등) ① 공사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규정에 따른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따른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23.>

② 공사는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및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추천·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보상금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이 포상금·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폐정리 2021.3.25.> <개정 2021. 7.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

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23.>

<조문신설 2020. 3.11.>

제16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사에서 처리한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서(별지서식 제7호)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7.23.>

1. 부조리행위등을 행한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개정 2021. 7.23.>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개정 2021. 7.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0. 3.11.>

제16조의4(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사는 신고자,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조문신설 2021. 7.23.>

제17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신설 2020. 3.11> <개정 2021. 7.23.>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① 부조리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23.>

② 외부위탁익명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부조리행위등과 관련

한 신고의 경우 규정 제6조제6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 내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23.>

③ 외부위탁익명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의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 7.23.>

제4장 신고사무처리 및 기록의 관리

제20조(신고사무처리 원칙)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보고, 징계요구 등 신고사무처리를 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규정에 의한 기안용지의 사용 및 문서 수발신 등을 생략하고 간이결재 형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기록의 보존 등) ①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련된 각종 기록의 보관, 보존관리는 책임관이 담당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련된 각종 기록을 신고자의 신분누설 등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기록의 보관, 보존관리 및 폐기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허가) ① 신고자, 신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감사실에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열람 및 등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관계인의 신분노출 및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책임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이 진상조사나 감사를 위한 목적으로 신고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기록의 열람·등사는 책임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보존사무 담당직원을 열람에 참여시켜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경우에 따라 감사를 위한 목적으로 외부 감사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폐정리 2021.3.25>

③ 책임관이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의 개정으로 「내외부 신고사무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16.11. 2>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1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9.>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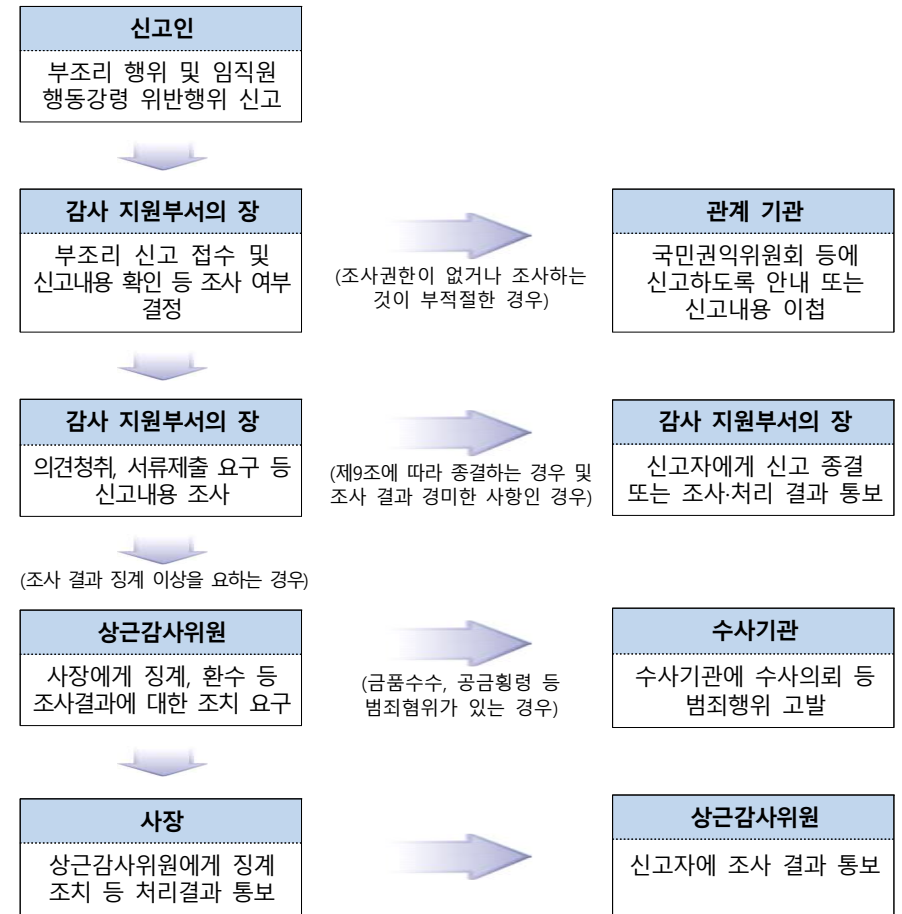
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3.>

이 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7조 관련) <개정 2021. 7.23.>

<부조리행위등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별표 2] (제16조의2 관련) <개정 2020. 3.11., 2021. 7.23.>

보상금 등 지급기준

1. 포상금 지급 기준

- ① 지급 사유 :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조리행위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선고, 징계처분 및 경고·주의처분 등이 있는 경우
 - 나. 규정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다. 신고내용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라.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지급 금액

가. 지급 사유 중 가목에 의한 경우 : 지급 상한 기준 이내에서 감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지급 상한 기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 상한 기준 이내에서 상근감사위원이 정하는 금액)

처분 정도	지급 상한 기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선고	1억원
징계처분	· 면직, 변상 : 5,000만원 · 정직 : 3,000만원 · 감봉 : 1,000만원 · 견책 : 500만원 · 경고 : 100만원
경고·주의처분 등 경미한 처분	50만원

나. 지급 사유 중 나, 다, 라목에 의한 경우 : 1억원 이내에서 감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2. 보상금 지급 기준

① 지급 사유 :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금
- 나.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다. 계약변경 등에 따라 절감된 비용
- 라.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② 지급 금액 : 보상 상한액(20억원) 이내에서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에 따른 금액

3.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발생하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지급 금액이 가장 큰 사유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지급 금액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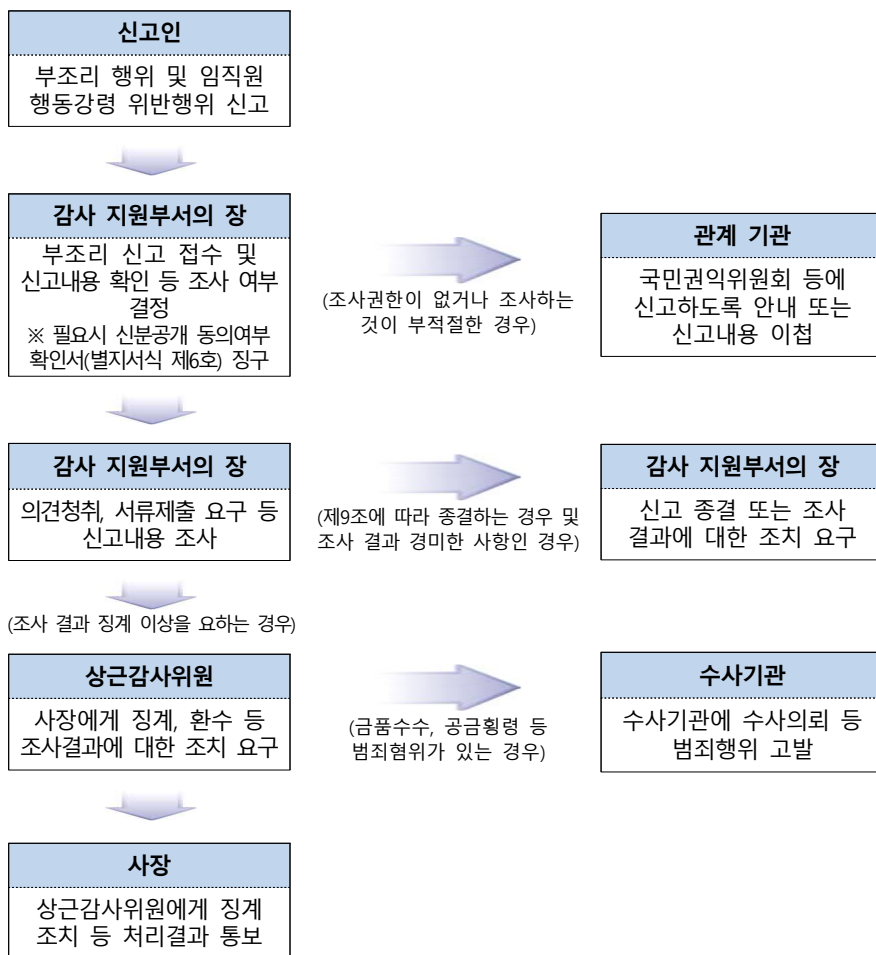
[별표 3] (제10조, 제11조, 제15조 관련) <신설 2016.11. 2> <개정 2020. 3.11., 2021. 7.23.>

부조리행위등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구 분	보호의무 위반 내용			비 고
	제10조제2항 위반	제11조제3항 위반	제15조제2항 위반	
고의로 위반한 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중과실로 위반한 자	감봉, 견책	견책, 경고		

※ 위반행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외부위탁익명신고센터를 통한 부조리행위등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 취지 및 이유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행위등을 신고합니다.

20 년 일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위원 귀하

부 조 리 행 위 등 에 대 한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접 수 증

접수번호20부조리제호

접수일자20년월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년월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접수담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20부조리제호

접수일자20년월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년월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접수담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부조리)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부조리)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부조리)신고자는 신분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부조리)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부조리)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부조리)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부조리)신고자는 책임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부조리)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부조리)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부패(부조리)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부조리)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부조리)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부조리)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는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부조리)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별지서식 제6호] (제6조, 제10조 관련) <기존 별지서식 제1호 이기 · 개정 2021. 7.2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조리행위등에 대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의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위원 귀하

[별지서식 제7호] (제16조의3 관련) <신설 2020. 3.11.> <기존 별지서식 제2호 이기·개정 2021. 7.23.>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부조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이후에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